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78587(본소), 2013다7859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78587(본소), 2013다78594(반소)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51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B

원고보조참가인C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D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F

피고, 피상고인L

판결 선고 2016. 6. 23.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창원)2012나511(본소), (창원)2012나468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 D,

피고(반소원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N

이 유

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중개수수료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D이 원고 A으로부터 대부행위의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A의 피고(반소원고)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관금 반환청구 및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F이 원고 A에게 2007. 6. 29.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7. 24. 이를 반환받은 다음, 2007. 7. 31. 1억 원을 다시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횡령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D이 원고 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 아파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306호, 904호의 매매를 모두 위임받았는지 및 실제 매매대금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인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회사의 피고 L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L 사이에 잔존채권을 3억 4,500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감액하였다거나, 피고 L에게 이전해준 Y 아파트의 1채 당 가액을 1억 4,700만 원으로 정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D, F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D, F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3. 11. 29.에 접수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 중 원고 A과 피고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 회사와 피고 D,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